

구분	제 목	페이지
반품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신청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게 되었어요. 납부한 관세/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약상이환급 신청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2
	유니패스 사이트 회원가입 했어요. 언제 승인되나요?	3
	계약상이환급신청서 작성 화면을 알려주세요.	3
	계약상이환급신청서 작성화면 진입 시 "신고인부호가 없는 개인사용자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해요.	3
	처리세관, 처리과는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3
	환급종류와 지금계좌 실명번호 입력방법 알려주세요.	3
	'환급신청액 합계' 항목에 입력이 안돼요.	3
	'부가세등 결정일자' 는 어떤 날짜를 입력하는 건가요?	4
	'부가세' 항목에 세액 입력이 안돼요.	4
	[계약상이정보] 탭의 '계약상이 사유구분' 기재방법을 알려주세요.	4
	첨부파일 탭에는 어떤 파일을 첨부해야 하나요?	4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게 되었어요. 납부한 관세/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A.

-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반품 한 경우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반송수출신고 절차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 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 송품장,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가사용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의 경우 반송수출신고 필수)**

※ 구비서류

구분	개인 자가사용 미화1,000달러 초과 물품	개인 자가사용 미화1,000달러 이하 물품
공통서류	1. 환급신청서, 2.수입신고필증	
제출서류	3. 수출신고필증	3. 판매자의 반품확인 서류 4. 직구물품 반품 송품장 5. 환불영수자료

- **반품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 방문신청 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서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해외직구 반품환급] 화면 하단의 '환급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Q.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약상이환급 신청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나요?

A.

- **유니패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약상이환급 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니패스 사이트 로그인 하단의 [회원가입] 눌러 '일반(개인) 사용자' [사용자등록] 클릭

※ 일반(개인)사용자 사용자등록 선택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하고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내용의 팝업창 보여지나 [사용자등록진행] 눌러 진행

②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 [사용자정보] 탭 입력

※ [사용자정보] 탭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개인 공인인증서)

③ [부호및서비스] 탭 입력

- **업체유형: 개인무역, 개인화주직접신고 선택**
- **서비스종류: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 선택**

※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단계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로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업체유형에 '개인무역'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④ [SMS신청] 탭에서 [완료] 후 세관승인 받은 다음 로그인하여 계약상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Q. 유니패스 사이트 회원가입 했어요. 언제 승인되나요?

A.
- 유니패스 회원가입 승인은 보통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승인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세관으로 연락하여 승인요청도 가능합니다.

Q. 계약상이환급신청서 작성 화면을 알려주세요.

A.
- 유니패스 사이트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화면의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 계약상이환급신청서 작성화면 진입 시 "신고인부호가 없는 개인사용자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해요.

A.
- 신고인부호가 있는 개인사용자에 한해 계약상이환급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신고인부호 발급방법은 [My메뉴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수정] 화면 '부호및서비스신청' 탭의 업체유형: 개인무역, 개인화주직접신고 선택 → 변경 신청하여 세관 승인과 동시에 세관 신고인부호가 부여되며, 이후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Q. 처리세관 , 처리과는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A.
-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관련하여 개인이 계약상이환급 신청 할 경우, 개인 소재지 관할세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대표세관 처리과**

010(서울세관) – 75(심사정보과) / 020(인천세관) –75(심사정보과)
040(인천(공항)세관) – 64(조사(납세)심사과) / 041(김포공항세관) – 46(조사심사과)
021(수원세관) – 64(조사(납세)심사과) / 150(대전세관) – 64(조사(납세)심사과)
120(대구세관) – 64(조사(납세)심사과) / 030(부산세관) – 75(심사정보과)
071(광주세관) – 64(조사(납세)심사과) / 090(제주세관) - 46(조사심사과)

Q. 환급종류와 지금계좌 실명번호 입력방법 알려주세요.

A.
- **환급종류와 지금계좌 실명번호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종류: [B] 계약상이환급 (선택 시 '발생원인', '발생항목' 비활성화 됨)
- 지급계좌 실명번호1: 개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지급계좌 실명번호2는 기재하지 않음)

Q. '환급신청액 합계' 항목에 입력이 안돼요.

A.

▸ 해당 항목은 **'환급상세' 탭** 환급세액정보의 환급신청액(원) 입력 후 하단의 [+추가]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Q. '부가세등 결정일자' 는 어떤 날짜를 입력하는 건가요?

A.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일을 입력하는 항목으로 **계약상이환급 신청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Q. '부가세' 항목에 세액 입력이 안돼요.

A.

▸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과세과표'** 입력 시 과표의 10%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Q. [계약상이정보] 탭의 '계약상이 사유구분' 기재방법을 알려주세요.

A.

▸ 미화 물품 가격이 **1,000달러 초과**의 경우

- 계약상이환급신청 전 반송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상이 사유구분: **[A] 계약상이수출** 선택, 수출신고번호 입력 후 조회 시 나머지 필요한 내용은 자동입력 됩니다.

▸ 미화 물품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의 경우

- 반송수출신고 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상이 사유구분: **[E] 개인자가사용수출** 선택, 나머지 항목은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Q. 첨부파일 탭에는 어떤 파일을 첨부해야 하나요 ?

A.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 자가사용 미화1,000달러 초과 물품	개인 자가사용 미화1,000달러 이하 물품
공통서류	1. 환급신청서, 2.수입신고필증	
제출서류	3. 수출신고필증	3. 판매자의 반품확인 서류 4. 직구물품 반품 송품장 5. 환불영수자료

※ 첨부파일 첨부 후 '전송' 이 완료 되었다면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